ISSUE ANALYSIS
제 9호 (2025. 8. 4.)

북한 헌법의 모순점에 대하여

김성주
한반도전략연구센터

www.kpiri.co.kr

한반도문제연구소
Korean Peninsula Issues Research Institute

북한 헌법의 모순점에 대하여

김성주
한반도전략연구센터

북한 법체계의 근본적인 모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모순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찰한다.
북한의 법은 현대 국가에서 통용되는 법치주의의 틀이 아닌,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헌법 자체의 내재적 불일치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하위 실정법 및 실제 관행 간의 괴리라는 두 가지 주요 형태로 나타난다.

북한 헌법은 인민 주권과 평등을 선언하면서도, 실제로는 조선로동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명시하고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을 공고히 하는 심각한 모순을 내포한다.
또한, 종교의 자유, 이동의 자유, 문화생활의 권리 등 헌법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하위 법령과 통제 기제는 이러한 권리들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주민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법체계의 이중성은 주민들의 삶을 예측 불가능하고 억압적인 환경으로 몰아넣으며, 국제사회에 대한 기만적인 외양을 제공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모순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그 배경에 깔린 북한 정권의 통제 전략과 이념적 지배 의도를 분석한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법은 김일성의 언급처럼 “정치의 한 개의 표현 방식“에 불과하며, 이는 북한 독재 정치의 비체계적이고 자의적인 특성을 명확히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에게 이들의 헌법적 권리를 알리고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제언한다.

북한사회에서 법이란, 그 존재감이 거의 없는 사회 구성요소 중 하나이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법전을 배포하지 않으며, 전체적인 내용을 교육하지도 않고, 가끔씩 '사회주의 법무생활' 을 강요하면서 북한 당국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교육해야 할 형사법 일부를 교육용 비디오를 통해 제한적으로 보여주기만 할 뿐이다. 주민들은 대부분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을 위한 10대원칙" 을 사실상의 법으로 인식하며, 이 10대원칙 상위에는 최고지도자의 교시 말씀이 있을 정도로 정해진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사회가 아닌 독재자 1인의 의지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이기에 법을 등한시하는 현상이 가속화되어 지금에 이른 것이다.

북한의 헌법과 그에 따른 법체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1. 헌법 자체의 모순성

1) 북한 헌법 제4조~제8조 내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인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주권을 대한민국 국회 및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및 지방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행사한다고 되어있다. 거기에 비밀투표를 보장하고 있으며, 투표권자들은 자신의 지역구 대의원(한국의 국회의원에 해당)이 신임을 잃은 경우 언제든지 소환조치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8조의 경우 국가는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실제로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제11조 내용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모든 주권이 인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으면서, 실제 주권행사의 모든 활동은 국가가 아닌 일개 정당인 조선로동당에서 진행한다고 선언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2) 북한은 헌법 제65조를 통해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

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실상 북한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 등으로 나누고 개개인의 사회적 토대를 설정하여 죽을때까지 바꿔주지 않으며, 농민의 자식은 농민을 세습하고 간부의 자식은 간부를 세습하는 사실상의 신분제 사회이다.

이를 법조항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2만명 넘는 탈북민들의 일관된 증언으로 증명되었으며, 최근 북한에서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백학벌의 새봄"에서도 공부를 제일 잘하는 농민의 딸은 김일성종합대학 등 명문대가 아닌 근처 농업대학에 배치되고, 그보다 공부를 못한 간부의 딸은 김일성종합대학에 합격하는 사회상을 그리기도 할 정도로, 북한 주민들 역시 출신성분 즉 토대에 의한 사회적 차별을 똑똑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헌법과 실정법의 불일치

헌법은 해당 국가의 법체계에서 최고 규범으로 되며, 헌법을 위반하는 민법-형법-노동법 등은 원칙적으로 제정이 되면 안되는 것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우 위헌청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제정된 위헌 법률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헌법은 다분히 선언적일 뿐, 헌법의 조항과 실정법-특히 형사법-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매우 많이 보여주고 있다.

1) 신앙의 자유

북한 헌법은 신앙의 자유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 형법 제291조는 미신행위죄를 정의하고 있으며, 2023년에 제정된 인민반조직운영법 제20조에서는 미신행위를 강력범죄와 유사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으로 규정하며 이를 예방 통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군중신고법 제15조 제10항에서는 다양한 범죄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중 미신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인민보안단속법 제21조에서는 “미신을 믿거나 요언을 퍼뜨리는 행위”를 인민보안기관, 즉 안전원 및 보위부원들이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북한 행정처벌법 제305조에는 미신행위를 한 자를 벌금 처벌 또는 3개월 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다.

2) 이동의 자유

북한 헌법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75조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인민보안단속법 제30조를 통해 인민보안기관은 려행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으며, 이 려행질서의 핵심은 지역간 이동 시, 허가절차인 려행증을 잘 발급받았는지 아닌지가 그 핵심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은 평양시로의 출입을 매우 엄격하게 통제하는 만큼,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여행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 려행증 사진>

3) 문화 관련

북한 헌법은 문화정서생활 등을 마음껏 누리게 보장한다고 선언한다.

[제53조 국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인 문화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컨텐츠를 전혀 제공해주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그러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들의 한류컨텐츠 소비를 일명 '3대 악법' 으로 불리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으로 억압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제공해주는 문화컨텐츠는 한없이 조악한 수준이면서, 또한 기승전결이 모두 최고지도자 찬양, 조선로동당 찬양, 사회주의 대가정 찬양으로만 이어지는 지겹기 짝이 없는 수준인데도, 인민들의 자의에 의한 자유로운 문화컨텐츠 소비를 국가적으로 폭압에 가까운 형태로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3. 결론

북한의 법체계, 특히 헌법체계는 그 자체로 심각한 모순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헌법은 오로지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며 그들의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상호 모순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굉장히 수준 낮은 반동성이 가득한 법이다. 헌법 조항 상호간에도 모순 배치되는 조항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하위 법령인 형법, 행정법 등에서도 모순점이 명징하게 나오는 등 이걸 제대로 된 법체계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다. 김일성은 "법은 정치의 한 개의 표현 방식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의 헌법을 보면, 그들의 독재정치가 얼마나 비체계적이며 제멋대로인지를 잘 알 수 있다. 법이 정치의 표현 방식이라고 한다면, 상호 모순점이 가득한 북한 법체계를 통해 북한이 얼마나 모순되고 잘못된 사회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의 헌법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북한의 헌법이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니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문화생활을 보장해줄 것을 명시하고 있으니 마음껏 한류 컨텐츠를 보라고, 려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니 마음껏 평양시를 비롯한 북한 방방곡곡을 자유롭게 여행다니며 거주이전의 자유 역시 보장하고 있으니 적절한 곳에 이사가라고 말이다.

//끝//

이 문건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한반도 문제 연구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